

『경상북도 중·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新도청시대와 더불어 경북 중·서부권 상생 발전을 위한 8개 시·군 현안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동대응 추진
- 중·서부권의 잠재적 발전역량 강화와 지자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연계사업발굴 등 상호협력의 틀 구축

3. 주요내용

- 안) 제1조~제4조 : 협의회 설치 목적, 구성, 조직, 사무소 위치
- 안) 제5조 : 주요 처리사무에 관한 사항
 -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설정
 - 국·도비 예산확보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-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
 - 재원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등
- 안) 제6조 : 협의방법에 관한 사항
- 안) 제7조~제8조 : 회의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
 - 정기회 : 연 2회(상·하반기)
 - 임시회 :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의 요구가 있을시
- 안) 제9조~제10조 : 협의사항의 준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안) 제11조 : 간사와 서기 지정 방법
- 안) 제12조~제13조 : 경비부담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
 - 자치단체 별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실무협의회 구성
 - 실무협의회 역할 및 활동사항
- 안) 제14조 :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사무인계에 관한 사항
- 안) 제15조~제16조 : 규약개정 및 보칙에 관한 사항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95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에 의거 경북 중·서부권 8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
- 신도청시대와 더불어 경북 중·서부권 상생 발전을 위한 8개 시·군 현안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중·서부권의 잠재적 발전역량 강화와 지자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연계사업발굴 등 상호협력의 틀을 구축할 것으로 판단됨.